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2019. 1.



목 차

I. 기본방침	1
II. 표창 종류 및 구분	1
III. 표창의 기준	2
IV. 표창업무 절차	5
V. 장관상 운영 특례	9
VI. 표창의 취소	12
VII. 행정사항	12

[붙임1] 장관표창 관련 서식

1. (서식1)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3
2. (서식2)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4
3. (서식3) 공적조서	15
4. (서식4) 추천대상자 명부	19
5. (서식5) 장관표창 체크리스트	21
6. (서식6) 안건자료 서식	22
7. (서식7) 공개검증 결과 보고서	23
8. (서식8) 결격사유 조회보고서	24
9. (서식9)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25
10. (서식10) 표창장 서식	26

[붙임2] 장관상장 관련 서식

1. (별지1) 교육부장관 상장 지원 승인 신청서	30
2. (별지2) 외부요청 상장 승인 검토사항 체크리스트	31
3. (별지3) 상장 수여결정 사항 통보 공문 서식	32
4. (별지4) 교육부장관 상장 수여 결과보고서	33
5. (별지5) 상훈 발번 신청서	34

[참고1] 제한사항 조회 방법 35

[참고2] 관인 인영 사용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39

「정부표창규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교육부장관 표창의 일반적인 운용기준을 정함

2019. 1. 14. 개정

I 기본 방침

□ 장관표창의 영예성 제고

- 실·국은 배정된 총량 범위 내에서 장관표창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관례적·반복적 포상은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포상의 효과성이나 성과가 미흡한 분야는 축소 또는 폐지

□ 표창대상에 대한 엄정한 심사 실시

- 추천부서는 장관표창 지침에 부합하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체 추천기준을 적용·운영하여야 함

□ 국정개혁 지원 및 국정과제 추진 유공자 적극 발굴

-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및 유공자를 발굴·표창함으로써 주요정책과제 추진 뒷받침

II 표창의 종류 및 구분

□ 표창의 종류

- (공적 표창) 표창장 수여
 -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행정업무의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국가 또는 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성적 표창) 상장 수여
 -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순위가 정해지는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표창의 구분

○ 대상별

- (개인표창) 개인의 공적에 따른 표창
- (단체표창) 기관 또는 단체의 전체 공적에 따른 표창

○ 계획별

- (정기표창) 장관표창 수여계획에 반영된 표창
- (수시표창) 장관표창 수여계획 외 표창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여하는 표창

※ 수시표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며 정기표창 조정을 우선으로 함

Ⅲ 표창의 기준

* (추천일 기준) 추천 접수 마감일

1 수공기간

- (공무원) 추천일 기준 재직기간(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당해 직무를 6개월 이상 직접 담당한 자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 (일반인)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자
- (퇴직자 표창) 교육부 별도 운영계획에 따름
- (기관 또는 단체)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단, 일반인 및 기관(단체)의 경우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및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표창 금지) 수여예정인 표창의 추천일 기준으로 교육부 장관표창 기수여일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관

※ 다만, 기관표창의 경우 재표창금지 기준 적용을 동일분야로 한정

3 추천제한

공 통

- 재표창 금지기간 내 추천되는 자
 - ※ 다만, 장관상, 퇴직자 표창,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재표창금지 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각종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 자(국무총리 표창 이상)

공무원

※ 회계직원, 공공기관, 산하기관, 사립학교 임직원 및 교원 포함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 가능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는 제외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다만, 공무원의 경우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공적이 탁월할 경우 표창 대상자로 추천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횡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 포함)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주의·경고 처분 받은 자
 - ※ 다만, 퇴직자포상의 경우 1년 이내 주의·경고 추천제한 적용을 제외함

일반인

○ 형사처벌을 받은 자

- ①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자
- ②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③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④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⑥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⑦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최근 3년 이내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단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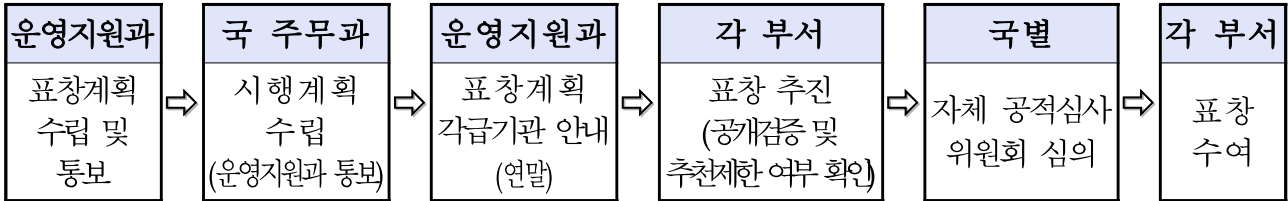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IV 표창업무 절차

<장관표창 업무 절차 흐름도>



□ 연간 표창계획 수립

- 정기포상은 매년 말 상훈 총괄부서 주관의 차년도 정기포상 수요조사를 통해 총량 배정되며, 당해연도(1.1.~12.31.)에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 단, 퇴직자표창 및 국민교육발전유공, 스승의 날 유공 표창의 경우 총량배정에 미포함
- 각 국에서는 총량 안에서 장관표창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 후, 국장의 승인을 거쳐 운영지원과에 통보
 - ※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장관표창의 이월 제한

□ 사전알림제 실시

- (연간계획 알림) 운영지원과에서는 매년 말, 각 국에서 제출한 장관표창 계획과 정보*를 각급기관에 안내 및 홈페이지에 공개
 - * 표창명, 개수, 시기,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등

□ 표창 대상자 심사

- (공개검증) 추천 부서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추천대상자 명부를 10일간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 우리 부 홈페이지(교육부 소식/표창대상자 공개검증)에 10일 이상 게재
- 추천 부서는 공적심사 전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장관표창 추천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

- 공적심사 시 공개검증 결과와 추천부서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 공적심사위원회는 제출받은 공개검증 결과 및 추천부서의 검토 의견 등을 고려하여 포상 추천여부를 최종 결정
- 표창 추진 부서는 공적심사 실시 전에 **추천제한 여부** 등을 조회하여 **부적격자를 제외한 후 공적심사 실시**
 - ※ 타 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산하기관·사립학교 임직원 및 교원, 기관(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반드시 우리부 감사관실에 징계 등 결격사유를 사전 조회하여야 함
- 공개검증 및 결격사유 조회 시 포상대상자에게 해당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별지 서식)'를 제출받아야 함
- 표창 추진 부서는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 원본(서명 및 직인 날인) 등 장관표창 추천 관련 서류 일체를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함

□ 추천시 유의사항

- 회계직원, 공공기관, 산하기관, 사립학교 임직원 및 교원의 경우 수공기간 및 추천제한 등 공무원의 기준을 적용함
- 추천부서는 추천기준을 준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함
- 추천일은 추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 단, 퇴직자는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함
- 단체표창(상장)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같이 기재할 수 없으며, 단체명으로 일원화
-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표창 후 표창장의 기재 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함
 - ※ 소속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명을 기재
- 공적요지는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 기여함'으로 끝나야함
 - ※ 사용금지 표현 :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 **공적요지**(예시 : 건설공사의 경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건설공사 시공 책임자로 참여하여 ○○○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 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억원)하고, 공기를 단축(○년○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 추천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이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의 포상 추천 공문을 동의서로 같음

□ **공적심사 실시**

- 담당부서는 표창대상자의 공개검증 및 추천제한 사항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추천제한 대상자를 제외하여 공적심사 추진

< 실국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

- ▶ 기능
 - 장관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사 및 추천의 적정성, 추천 여부 의결
 -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 여부 심사
- ▶ 구성 : 국별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2개이하 과일 경우 3명)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 자격
 - 위원장 : 국장급
 - 위원 : 과장급(팀장급, 서기관 또는 연구관 포함) 공무원
 - 간사 : 추천부서의 부서장이 소속 부서에서 지정하는 사무관(또는 서기관)
- ▶ 임기 : 해당직위 재임기간
- ▶ 운영
 -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온라인(e-공적심사시스템)으로 운영 가능
 - ※ 온라인 공적심사 의결 시 심사위원들에게 추천 대상자들의 공적사항, 자격, 심사기준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엄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위원장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의는 비공개, 회의록 작성(e-공적심사시스템 이용시 시스템 등록 자료로 같음)
 - 오프라인으로 공적을 심사·의결하는 경우 공적심사의결서(서식 7) 사본을 e-공적심사 시스템 공적심사전체관리 메뉴에 등록하여야 함

- 각 소속기관 등에서 공적심사를 하였더라도 우리부 자체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함

※ ‘감사장’의 경우 공적심사 실시 등 표창과 동일한 절차로 수여함

〈 공적심사 추천 관련 서류〉

- | | |
|----------------------|--------------------|
| ① 자체 표창계획 결재본 및 심의기준 | ⑥ 장관표창 체크리스트<서식5> |
| ② 인사기록요약서<서식1> | ⑦ 안건자료<서식6> |
| ③ 장관표창 동의서<서식2> | ⑧ 공개검증결과보고서<서식7> |
| ④ 공적조서 사본<서식3> | ⑨ 결격사유 조회 보고서<서식8> |
| ⑤ 추천대상자 명부<서식4> | ⑩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서식9> |
- ※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 원본 등 관련서류일체를 자체보관하여야 함

□ 표창 수여

- 표창대상자 결정 후, 운영지원과(총무기록팀)로부터 상훈 번호를 부여받아 해당부서에서 표창장 및 상장을 제작하여 수여함
- 상훈번호 발번 후 운영지원과(총무기록팀)로부터 직인(인영)날인 신청

※ 세부 신청 절차 및 기준은 (참고2) 참조

〈발번 및 직인 신청시 제출서류〉

- ◇ (표창장) 국별 시행계획,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상훈 발번 신청서, 대상자 명부
- ◇ (상장) 국별 시행계획, 대회(행사) 심사 결과, 상훈 발번 신청서, 대상자 명부

V 장관상 운영 특례

□ 지원여부 판단기준

① 지원기준

<장관상장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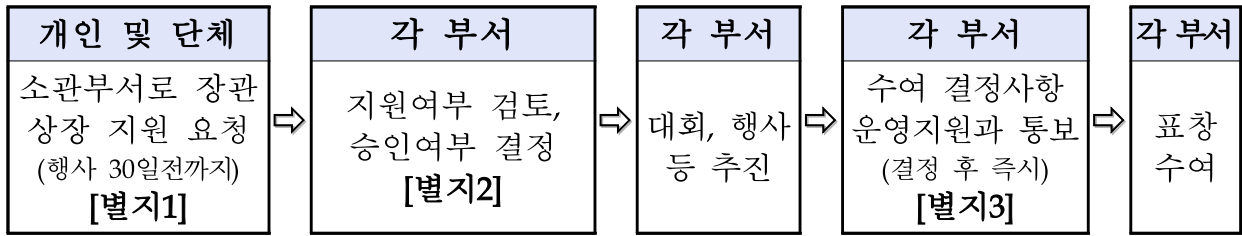
- 우리부 및 우리부 소속기관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 우리부가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 우리부 허가법인이나 단체 또는 우리부 등록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정부시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이 포함된 행사로 주관부처의 요청이 있는 행사
 - 우리부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된 행사로서 전국 규모의 행사 및 참가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적 부담 등을 요구하지 않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
 - 기타 표창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필요시 추천부서에서는 운영지원과와 협의 후 차관전결로 결정

② 지원제한

- 일정기간(3회 이상) 동안 대회운영의 건전성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시상함을 원칙으로 함
- ※ 다만, 우리부 주관 행사로 반드시 신규대회부터 상장을 수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국 배정범위 내에서 시행
-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범위가 5개 광역자치단체 이상에서 참가자가 있어야 함
- ※ 단체의 명칭, 소재지와 관계없이 실질적 활동내용으로 결정함
- 국·내외적으로 권위가 있고, 공익목적의 행사로 참가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적 부담 등을 요구하지 않는 비영리 행사를 원칙으로 함
- 선행학습이나 사교육 등을 조장할 수 있는 각종경시·경연대회 등이 아닌 행사
-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행사

□ 장관상의 심사 및 수여절차

① 상장 지원 승인 절차



※ ‘장관상’의 경우 공적심의회 생략 가능

② 소관부서 검토

- 당해 행사내용과 업무관련성의 정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소관 부서에서는 장관 상장 지원 승인 신청서 등을 접수

< 장관 상장 지원 신청 서류 >

- ① 장관 상장 지원 승인 신청서[별지1]
- ② 당해 행사 계획서(요청사유서, 행사계획 포함)
- ③ 기관(단체)의 현황, 정관 또는 회칙 사본,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 ④ 전년도 행사운영실적 보고서

- 소관부서에서 지원신청 서류를 제출받아 장관상장 지원기준 및 제한사항을 검토(장관상장 지원 체크리스트[별지2] 작성)하여 상장 지원 승인 여부 결정
- 소관부서는 해당 단체의 행사계획서(심사기준, 방법 포함), 민간단체 설립허가서(등록증), 정관 또는 회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 상장은 ‘표창의 추천제한’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실적저조, 사회적 물의 야기 등 부적합 행사는 시상 추천 제외
- 소관부서는 수여 결정 후 제출서류[붙임2 등]를 구비하여 운영 지원과에 즉시 통보

< 수여 결정사항 통보 제출 서류 >

- ① 실·국별 표창 시행계획
- ② 상장기본(심사기준) 계획
- ③ 상장지원 체크리스트[별지2]

③ 시상 방법

- (시상 정의) 개인 또는 단체 명의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 명의로 시상 시 그 구성원(개인 또는 단체)에게는 표창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다만, 두 사람 이상의 개인 또는 둘 이상의 단체가 하나의 단체를 이루지 않고 협업하여 공동출전한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시상 가능
 - 공동명의 시상 시, 상장에 공동수상자 이름(명칭)을 나란히 기재(홍길동·김갑동)하여 각각 상장을 교부
 - 공동수상자가 3인(또는 3개 단체) 이상인 경우 수상자별 이름(명칭)과 나머지 수상자의 수를 기재('홍길동 외 0명')하여 교부
 - 장관표창 취소사유(허위공적에 한함) 발생 시 전부취소
- (상장번호 발번) 수여결정 후 '국별 시행계획', '심사결과'와 '상훈 발번 신청서[별지5]'를 첨부하여 수여일 7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총무기록팀)에 제출
 - 다만, 수상자가 시상일 당일에 결정되는 경우 임시 상장 번호를 요청하고, 시상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상자 명단 등을 첨부하여 제출

④ 승인취소

- 행사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교육부장관 상장 지원 제한
 - ※ 승인취소 후 운영지원과로 관련내용을 통보

⑤ 상장 수여 결과 보고

- 행사주최 기관은 행사종료 7일 이내 소관부서로 결과 보고[별지4]
 - ※ 관련서류는 소관부서에서 보관
- 행사를 주최한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사유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함

VI 표창의 취소

□ 대상 및 절차

- (대상)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 (취소 절차) 추천부서는 공적의 재검증, 당사자에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통해 취소사유 해당여부를 확인 후, 공적심사위원회에 표창 취소 안건을 상정해야 함

□ 사후 관리

- (대장 삭제) 추천부서에서는 해당 증서를 회수하여 운영지원과(인사팀)으로 송부하고, 운영지원과(총무기록팀)은 상훈대장에서 삭제
- (추천 제한) 표창이 취소된 자는 향후 3년간 장관표창 추천을 제한함

VII 행정사항

- 이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함
- 추천부서는 「정부표창규정」,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이 지침을 숙지하여 표창 추진
- 각 국에서는 총량 안에서 장관표창 운영계획을 수립 후, 국장의 승인을 거쳐 운영지원과에 통보
- 국의 표창을 내부적으로 조정할 경우 조정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담당 국장의 승인을 거쳐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함
 - ※ 정기표창 계획상 반영규모를 증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와 사전 협의검토를 거쳐 「차관」 전결로 결정하고 표창 추진 시 차관전결 공문을 첨부하여야 함
 - ※ 운영지원과 사전협의 없이 국별 총량을 초과하여 운영할 경우, 다음 연도 장관표창 총량 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표창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준함

붙임1**장관표창 관련 서식**

〈서식 1〉

공무원 인사 기록 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생년월일(성별)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input type="checkbox"/> 재직자 <input type="checkbox"/> 정년퇴직 <input type="checkbox"/> 명예퇴직 <input type="checkbox"/> 의원퇴직 <input type="checkbox"/>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년 월 일)
합 계㉔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㉕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㉖-㉗)	년 개월	19)추천훈격	
----------------	------	---------	--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 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인)	직급	성 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 :
- 직위 (급) :
- 성 명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확인사항

상기 본인은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추천 제한 사유가 추천 후 확인될 경우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 하겠습니다.

20 . . .

성명 (서명)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월일)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공 적 조 서(기관)

(앞 쪽)

기관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법 인 번 호	13자리
주 소			
대 표 자 성 명		공 적 기 간	0년 0월로 기재 예)23년 5월
공 적 분 야			
<p>공적 요지(70자 이내)</p> <p>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문장의 끝은 '~에 기여함' 으로 끝나야 함 ※ 사용금지 표현 :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 공적요지(예시 : 건설공사의 경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건설공사 시공 책임자로 참여하여 ○○○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 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억원)하고, 공기를 단축(○년○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p> </div>			
조사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p>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추천관	직 위	성명 (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교육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이력사항
	공적기관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월일)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서식 4〉

추천대상자 명부

순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단체명)	공적기간 (재직기간)	① 공적 개요	② 추천제한 조회결과	③ 기서훈	④ 징계	⑤ 물 의 야기
					※ 기관일 경우에도 입력 ※ 50자 내외				
	<예시>								
<기관>	〇〇 대학교	-	〇〇 대학교	03.05		무	'13.8.4 교육부 장관표창 (국민교육 발전유공)	무	인문보도 (17.12.1)
<개인>	〇〇 교육청	교육행정주 사	홍길동	10.05		무	무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 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〇. 〇〇. 〇〇

작성자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 ①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사용금지 표현 :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 ② 추천제한 조회결과 : 일반인·단체일 경우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세금 체납 등 추천제한 조회 결과 표기
- ③ 기서훈 : 기 표창 수여자 2년 이내 표창 금지
- ④ 징계 : 경징계(감봉·견책)·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말소·사면 여부를 표기
※ 불문경고가 말소 또는 사면, 경징계가 사면되었을 경우에만 추천 가능(이 외 징계처분 추천불가)
- ⑤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 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작성시 유의사항

- 기관 표창의 경우도 직위를 제외한 위의 사항을 모두 기재 해야함
- 위 사항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목 적

-

표창 개요

- 훈격 : 장관표창
- 규모 :
- 추천대상 :

추천 절차

- 부서 자체 심사 :
- 후보기관 공개검증(우리부 홈페이지) :
- 후보기관 결격사유 조회결과 통보(감사관실) :
- 결격사유 해당자 추천 사유 : (불문경고 말소 또는 사면자, 경징계 사면 대상자 추천할 경우 작성)

향후 계획

- 표창장 전수 :

공개검증 결과 보고서

공개검증 개요

- 포상건명 :
- 공개매체 :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공개기간 : '18.00.00. ~ 00.00.(10일 이상)
- 공개내용 : 대상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훈격, 공적요지

제출 의견 또는 민원

-

피추천인의 소명 또는 관련기관 조회(검토)결과

-

【붙임】 공개검증 화면 1부

결격사유 조회보고서

포상건명 :

조회대상

○

징계경력(불문경고 포함), 징계절차 진행 여부

○ 조회결과 : 추천대상 00중 00조회, 결격사유 해당자 00명 확인

○ 처리방안 : 결격사유 해당자 00명 중 00 추천

일반인 추천제한 조회 결과

○ 조회결과 : 추천대상 00중 00조회, 결격사유 해당자 00명 확인

○ 처리방안 : 결격사유 해당자 00명 중 00 추천

【붙임】 감사담당부서 회신 공문 1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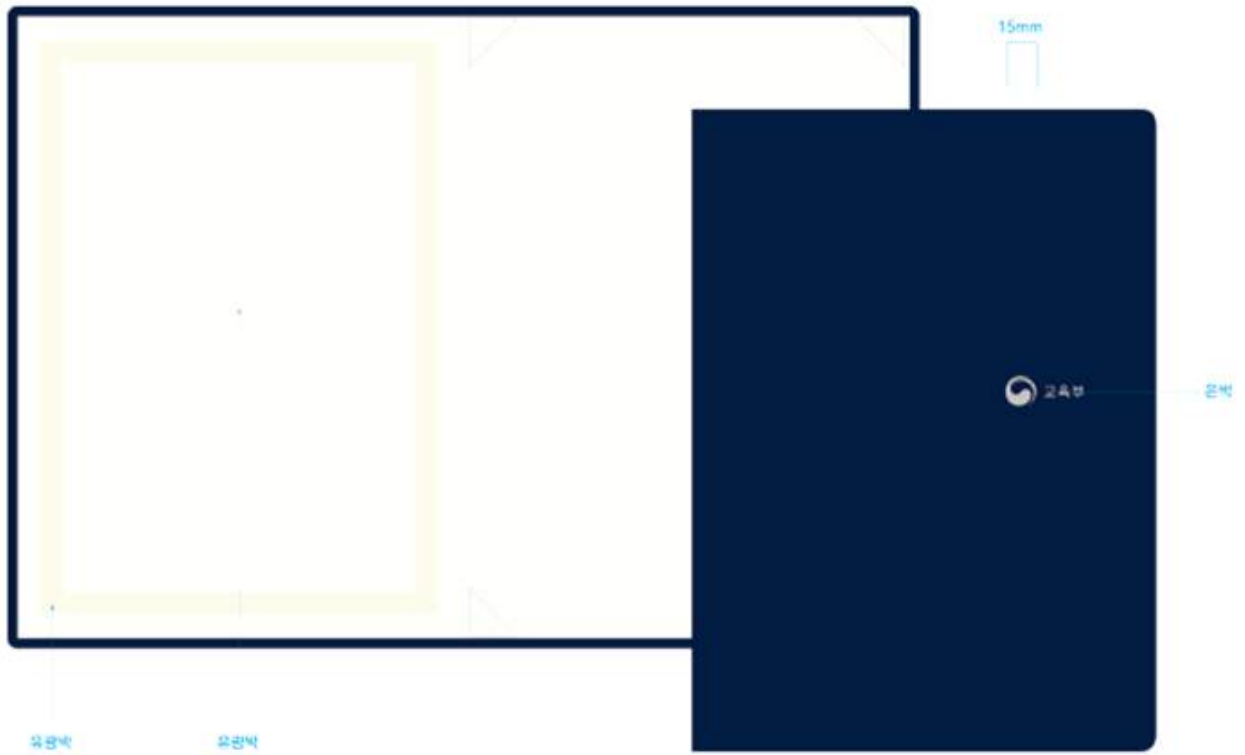
- 안건명 : ○○의 장관표창의 건
- 의결결과 : 원안과 같이 ○○대학교 행정사무관 김○○ 외 00에게 장관표창을 수여하기로 의결함

위원		의견		
		可	不	비고
위원직위(위원장)	○○○	(서명)		
”	○○○	(서명)		
”	○○○	(서명)		
”	○○○	(서명)		
”	○○○	(서명)		
”	○○○	(서명)		

교육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서식 10>

표창장 서식



- 표지 사이즈: 225mm x 310mm
- 인조가죽 또는 고급 우단에 판지를 합지 가공
- 표시 요소는 은박 처리



□ 증서 제원

구 분		내 용	비 고
규 격	크 기	· 가로 210mm × 세로 295mm	A4용지크기
	상단문양	· 정부 문양, 폭 29.5mm, 칼라	상단중앙
	테 두 리	· 무궁화무늬(금색, 단선 문양), 폭 7mm	정부포상은 2중 문양
	배 경	· 정부상징 디자인, 컬러 불투명15%	중 앙
	하단문양	· 정부상징+부처명, 지름 40mm, 은박(형압)	하단좌측
내 용	관리번호	· 제 연도-상훈번호 호 (제 18-0000 호) · SM오륜 - 14pt 진하게	상단좌측
	명 칭	· ‘표창장’ - SM오륜, 47pt, 진하게	상단중앙
	수 상 자 인적사항	· ‘소속’ - SM오륜, 22pt, 진하게 · ‘직급’ - SM오륜, 22pt, 진하게 · ‘성명’ - SM오륜, 31pt, 진하게	상단우측
	표창문안	· SM오륜, 27pt, 진하게	중 앙
	수여일자	· SM오륜, 22pt, 진하게	하단중앙
	기관장 명칭	· SM오륜, 22pt, 진하게(장평 92%)	하단중앙
	기관장 서명	· 가로 54.5mm × 세로 13.5mm · 궁서체, 40pt(장평 100%, 자간 2%)	하단우측

□ 용 지

구 분	내 용	비 고
색 상	· 미색(米色)	
중 량	· 160 ~ 180g/m ²	
성 분	· 닥(70%), 천연펄프(30%)	

붙임2**장관상장 관련 서식**

<별지 1>

교육부장관 상장 지원 승인 신청서			
기 관	명 칭		
	소재지	(전화 :) (FAX :) (E-mail :)	
	대표자	생년월일	
행 사 개 요			
행 사 명			
행사목적 및 행사내용			
주최		후원	
상장 필요성			
교육부장관 상장 매수			
행사기간 및 장소		기간 : . . . ~ . . . (일간), 장소 :	
참석대상 및 인원		대상 : 인원 : 명 (추정)	
위 행사에 대한 교육부장관 상장 지원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대표자 ○○○ (직인)			
교육부장관 귀하			
※ 붙임서류 1. 교육부장관 상장 승인 신청 내역서 1부. 2. 행사계획 (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소요예산(참가자에게 참가비 부담여부 포함), 참가자의 참가조건,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주시고,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4.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5.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6. 전년도 행사운영실적 보고서 (해당사항 있을 경우) 1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연례 행사는 4~6번 서류 생략가능			수수료 없 음

<별지 2>

외부요청 상장 승인 검토사항 체크리스트

	항목	검토사항	해당여부 (○,×)	참고자료
지원 기준	1. 업무관련성	○ 우리부 주관 행사	○	○ 직제, 관련 사업 등 ○ 행사계획서
		○ 우리부가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		
	2. 주관 단체의 적정성	○ 우리부 허가 법인 또는 우리부 등록 단체 여부		○ 단체 등록·허가증 ○ 단체의 정관, 사업 계획서 등 ○ 주관부처 공문 등
○ 정부시상이 포함된 행사로 주관부처의 요청이 있는 행사				
지원 제한	3. 대회의 적정성	○ 우리부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된 행사		○ 행사계획서 ○ 행사 결과보고서
		○ 5개이상 광역자치단체에서 참가하는 전국대회 여부		
		○ 참가비 적정 여부 ※ 이 경우 위의 37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 제한	4. 대회 운영의 안정성	○ 대회의 3회 미만 개최 여부	×	○ 최근 3년간 행사 결과 보고서 ○ 언론보도 등
		○ 대회의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	
	5. 우리부 시책 부합여부	○ 선행학습이나 사교육 등을 조장할 수 있는 각종경시·경연대회 여부	×	○ 행사계획서
○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		

201○. ○○. ○○

작성자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참고 사항>

- ◇ (지원 기준 부합) 업무관련성, 주관단체의 적정성, 대회의 적정성 중 반드시 한가지 이상 해당사항이 있어야 함
- ◇ (지원제한 확인) 대회운영의 안정성, 우리부 시책 부합여부 등 지원제한 사항에 한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지원 불가

※ 우리부가 주최가 아닌 외부요청 상장일 경우 작성

<별지 3>



교 육 부

수신 운영지원과장
(경유)

제목 2018년 ○○대회 장관상장 수여결정 사항 통보

○○대회 장관상장 수여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상장 수여 내역

가. 표창명 :

나. 인 원 :

다. 기본계획상 해당사업명 :

2. 상장 수여 예정일 :

붙임 1. 실·국 표창 시행계획 1부.

2. 0000년 ○○상장 기본계획 1부.

3. 외부요청 상장 승인 검토사항 체크리스트 1부.

4. 대상자 명단 1부. 끝.

○○○○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과-00 (. .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어진동, 교육부) / www.moe.go.kr

전화 044-203- / 전송 044-203- / @korea.kr / 비공개(5,6호)

<별지 4>

교육부장관 상장 수여 결과보고서

① 행사명				
② 일시 / 장소	일시		장소	
③ 행사기관	주최		후원	
④ 참여인원				
⑤ 교육부장관 상장 수상자 현황	*수여자 인적사항(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⑥ 행사 세부내용	* 행사진행 경과, 심사절차(방법), 시도별 참가현황 등 * 상장 수여기준 및 내용			
⑦ 특기사항	* 행사진행과정중 특이한 내용, 성과(기대효과 등), 건의사항 등			

※ '행사결과 보고서'는 기관(단체) 별도 양식에 따른 제출도 가능

<별지 5> 장관표창(상장) 상훈발번 신청서 서식

① 소속	② 직급	③ 성명	④ 생년월일 (YYYYMMDD)	⑤ 공적내용	⑥ 훈격	⑦ 수상년월일	⑧ 비고	⑨ 수상구분	⑩ 수상구분내용	주관부서	담당자
예제) 충청남도 교육청	행정사무관	홍길동	19880101	국민교육발전유공	장관표창장	20180701		개인수상		운영지원과	상훈담당자

☞ 위의 사항을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작성요령> ※ 노란색 음영부분은 필수입력사항

- ① 소속 : 증서에 표기될 정확한 명칭(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명칭)을 기재
- ② 직급 : 지방행정주사, 시설사무관 등으로 기재(6급, 5급×)
- ③ 성명 : 증서에 표기될 정확한 이름 기재
- ④ 생년월일 : YYYYMMDD(년도월일) 8자리 기재(수상자 미확정시 00000000을 입력)
- ⑤ 공적내용 : 표창명(상장명) 입력
- ⑥ 훈격 : 장관상장/장관표창장 으로 입력
- ⑦ 수상년월일 : 증서에 표기 될 일자와 동일한 날짜(표창일) 기재

※ YYYYMMDD(년도월일) 형식으로 입력 (엑셀 서식 입력방법 : 입력-셀서식-텍스트로 입력)

- ⑧ 비고 : 특기사항 입력
- ⑨ 수상구분 : 개인수상/기관수상/공동수상/단체수상/단체공동수상 중 입력
- ⑩ 수상구분 내용 : 공동수상/단체수상/단체공동수상에서 관련내용이 있을시에만 입력

※ 팀원이 여러명이라도 상훈번호는 1팀 1개 발번 되므로 팀별 구분(팀명, 조명, 단체명 등)을 정확하게 입력

참고1

제한사항 조회 방법

장관표창 일반인 및 기관(단체) 추천제한사항 중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관련 제한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

1.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공표”로 검색
* http://www.moel.go.kr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공고 > 검색창 “공표” 검색 >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 등 공표 게시물 확인

뉴스·소식

- 보도자료
- 해명 및 설명자료
- 공지사항**
- 홍보동영상
- 카드뉴스·인포
- 월간내일웹진
- e-뉴스레터

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전체 **공고** 행사 입찰 인사 포상대상자공개 기타

전체 **공표** **검색**

총 게시물 : 62건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
62	[공고] 2017년 특수건강진단기관평가 결과	산업보건과		2018.01.10	1100
61	[공고] 2017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재예방정책과		2017.12.20	2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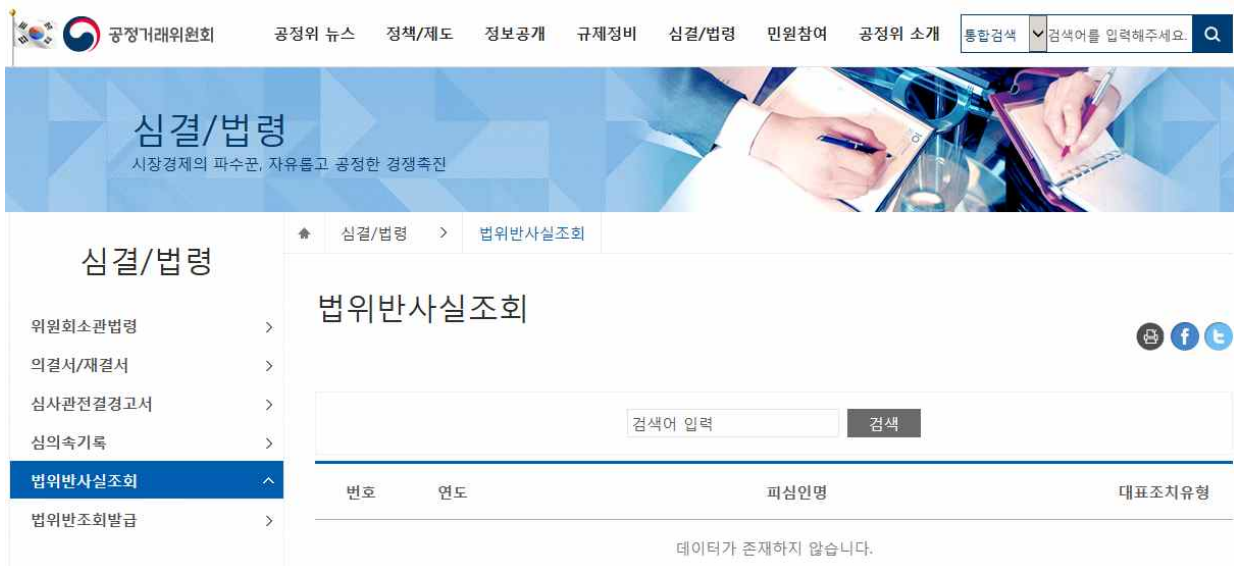
2. 최근 3년 이내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 http://www.ftc.go.kr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② 법위반사실조회 > 검색창에 사업장명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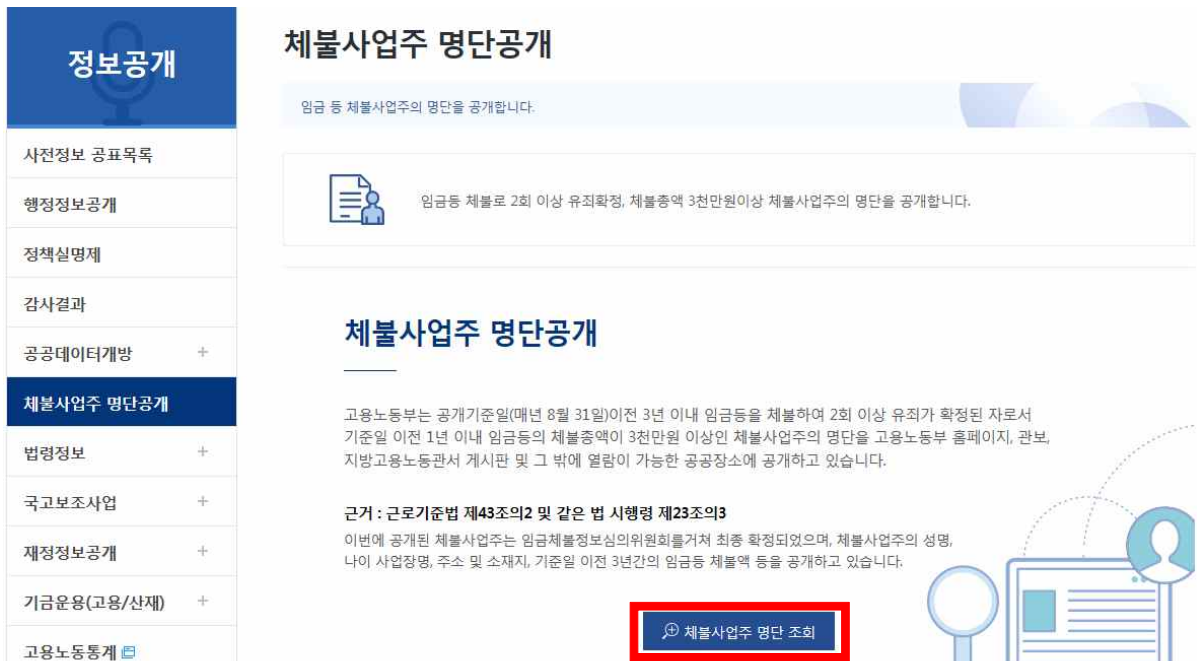
3. 최근 3년 이내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검색
 * http://www.ftc.go.kr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검색창에 사업장명 또는 성명을 입력하여 검색

* 체불액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 등 가나다순 고액순 전체 10개씩

선택-전체
지역-전체
[검색]

총 게시글 : 1,000건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체불액
강구희	56	경희한방병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70,332,768
강능조	72	창원토탈시스템 (주)강서수도사업 소 검침반	경기 하남시 서하남로43번길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48,848,956
강대영	64	(주)다우아이앤씨	서울특별시 양천구 절골10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외교센터	106,429,280
강대중	63	(주)젬파크바이오 텍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3번로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3번로	82,956,663
강만우	61	(주)명동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팔공로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팔공로	75,440,461
강민영	50	(주)코리아홀딩스	경기 시흥시 상직길	경기 화성시 서신면 바다돌길	41,972,000
강민정	37	맥스기획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21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48길	132,819,000
강성주	47	삼원건설(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흥안길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청운1길	98,270,000
강신관	46	(주)한국저당권거 래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7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5길	89,483,632
강장근	61	광림산업(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보화로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3길	31,481,742

참고2

관인 인영 사용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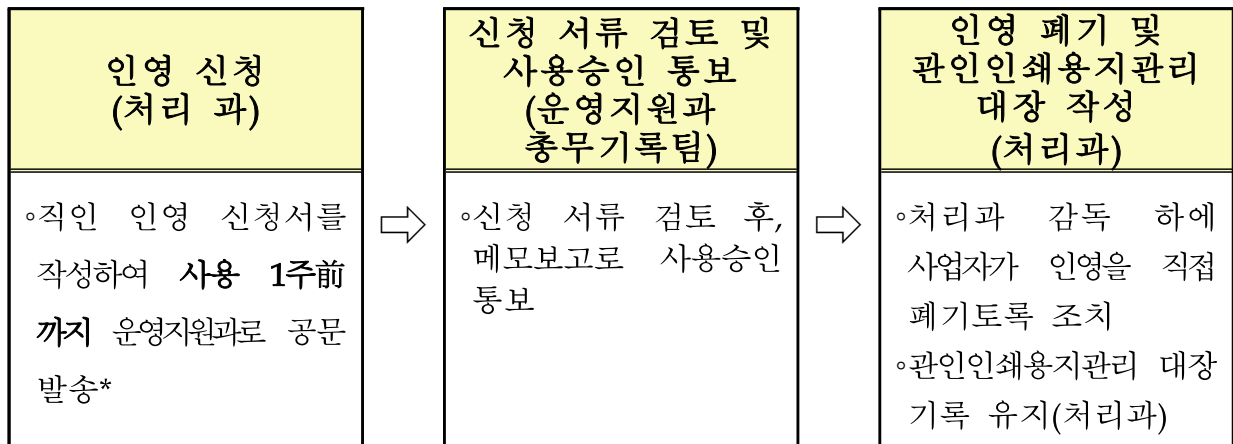
□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 신청 대상

- 표창장 및 상장 등의 건수가 다수(약 20매 이상)일 경우
- 공로패, 감사패 등 직접적으로 직인 날인이 곤란한 경우

□ 처리 절차



* <신청시 제출 서류>

기본결재 사본(상장 등 수여대상자 명단 포함), 공적심사위원회 심의결과서, 상장수여 결정사항 통보 공문(교육부 장관표창 업무 지침) , 각서 각 1부(처리과, 사업자), 인감 증명서 1부(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 사업자 각서에는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도장으로 날인

□ 협조사항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20매 이상인 경우만 인영신청, 20매 미만은 직접 직인 날인 요청
- 인영 신청 시 신청기한 준수 및 첨부 서류* 확인

* 사업자 각서에 날인된 도장이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도장인지 확인 필요

각 서

(사업자용)

상 호 : ○○인쇄

대 표 : 김

위 본인은 교육부 ○○과에서 인쇄 요구한 감사패 제작(2개)에 대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관인의 인영을 인쇄함에 있어 본 건 인쇄 이외의 타 용도에는 절대로 사용치 않을 것이며, ○○○ 제작 후 필름 또는 전자인영 파일을 폐기토록 하겠으며, 만약 본 건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8. .

서 약 인 김 ○ ○ (인)

- 붙임 1. 인감증명서 1부.
-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귀하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

인쇄 문서명			
관 인 명		인쇄관인규격	

일 자	인 쇄 량 (매)	사 용 량 (매)	사 용 명 세	잔 여 량 (매)	확 인 (서명)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인 인영 사용승인서

- 사용목적 :
- 사용기간 : . . . ~ . . .
- 인쇄업체 : ○○ 인쇄(서울시 구 동 -)
(대표: ○○○ 사업자등록번호 : - -)
- 인쇄사용수량 : 상자(또는 표창장) 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인 인영】